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의안번호	382
------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2023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3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의 3대 중점 영역을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으로 설정한 바,
-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①노후화된 교육시설개선, ②학교 청소용역비 및 미세먼지와 방역 관리 등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 강화, ③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및 과일급식 추가 지원 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①교육결손 회복 지원, ②기초학력보장 집중지원, ③더 질 높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지원, ④입학준비금,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등 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구현하며,
-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 ①「디벗」사업, 전자철판 설치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②서울형독서토론교육지원 및 초등 안성맞춤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서울형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③꿈을 담은 교실 및 놀이터,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2. 예산안 편성규모

-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8,915억 2,100만원으로, '22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된 예산 14조 3,730억 2,000만원보다 △10.3%, △1조 4,814억 9,800만원 감소된 규모임

〈표 1-1〉 2023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A)	2022년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증 감 률
예 산 액	12,891,521	14,373,020	△1,481,498	△10.3

3. 예산안 개요

(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규모

-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2조 8,915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10조 5,886억 3,500만원) 보다 21.7%, 2조 3,028억 8,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나, 금년도 최종예산(14조 3,730억 2,000만원)과 비교하면 △10.3%, △1조 4,814억 9,8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 세입예산은 ①이전수입 11조 3,643억 6,200만원, ②자체수입 1,263억 8,300만원, ③기타(전년도 이월금, 금융자산회수) 1조 4,00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고,
- 세출예산은 ①인건비 6조 7,553억 7,700만원, ②경상비 1조 1,543억 6,900만원, ③교육·시설사업비는 3조 7,252억 8,300만원, ④재무활동은 1조 2,364억 9,100만원, ⑤예비비 및 기타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2) 세입예산

-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0.3\%$, $\Delta 1$ 조 4,814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2조 8,915억 2,100만원임
- **이전수입**은 '23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의 88.2%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7.2\%$, $\Delta 2$ 조 3,602억 800만원 감소한 11조 3,643억 6,200만원으로,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1,842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6.2\%$, $\Delta 1$ 조 3,890억 5,000만원 감소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조 1,720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8.7\%$, $\Delta 9,621$ 억 1,200만원 감소하였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80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52.9\%$, $\Delta 90$ 억 4,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의 1.0%에 해당되며,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편성액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28.6\%$, $\Delta 507$ 억 2,500만원 감액된 1,263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는 세입예산의 10.9%에 해당되며,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 편성액 증가로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197.2%, 9,294억 3,500만원 증가한 1조 4,007억 7,4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1-2〉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도		2 0 2 2 년 도		증 감	증감률
		예 산 안	구성비	최종예산	구성비		
합	계	12,891,521	100.0	14,373,020	100.0	△1,481,498	△10.3
이	전 수 입	11,364,362	88.2	13,724,571	95.5	△2,360,208	△17.2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7,184,206	55.7	8,573,257	59.6	△1,389,050	△16.2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172,089	32.4	5,134,202	35.7	△962,112	△18.7
	기 타 이 전 수 입	8,066	0.1	17,111	0.1	△9,045	△52.9
자	체 수 입	126,383	1.0	177,109	1.2	△50,725	△28.6
기	타	1,400,774	10.9	471,339	3.3	929,435	197.2
	전 년 도 이 월 금	1,385,344	10.7	461,269	3.2	924,075	200.3
	금 융 자 산 회 수	15,430	0.1	10,069	0.1	5,360	53.2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

- '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2년도 최종예산 보다 △10.3%, △1조 4,814억 9,800만원이 감액된 12조 8,915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2) 성질별 자원 배분

- **인건비**는 '23년도 세출예산의 52.4%, 6조 7,553억 7,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3.0%, 1,979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 ①공·사립 교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인상, 호봉승급 및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 ②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가, 교원 명예퇴직 예상인원 증가로 인한 증액분, ③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및 변동점수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경상비**는 '23년도 세출예산의 8.9%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11.5%, 1,193억 7,700만원 증액된 1조 1,543억 6,900만원을 편성 요청함
 - '23년도에는 공공요금、물가인상、산업안전보건 강화 등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증액하고 단위학교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학교공간 자율환경개선 사업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보다 경상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사업비**는 '23년도 세출예산의 28.9% 규모로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8.1%, △3,287억 400만원 감액된 3조 7,252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교육사업비**는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3.6%, △1,000억 2,900만원 감액된 2조 6,747억 2,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이전수입 감소 및 정책사업 자체정비 결과에 따른 감액분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17.8%, △2,286억 7,500만원을 감액한 1조 505억 5,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물량 감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재무활동**은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21.5%, △3,403억 9,800만원 감액된 1조 2,364억 9,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BTL사업비 7,470억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에 따라 '23년도 본예산안에 BTL 상환비를 미편성하고, ②기금전출금을 금년도 보다 △2,364억 1,800만원 감액 편성한 영향으로 확인됨

○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 최종예산 편성액(1조 1,497억 900만원) 보다 △98.2%, △1조 1,297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나 '23년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1조 663억 3,700만원이 금년도 보다 감액편성된 것처럼 나타나며, 예비비의 경우에도 금년도 보다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반환금도 미편성하여 금년도 보다 편성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

〈표 1-3〉 세출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도		2 0 2 2 년 도		증 감	증 감 륜
		예 산 안	구성비	최 중 예 산	구성비		
합	계	12,891,521	100.0	14,373,020	100.0	△1,481,498	△10.3
인	건 비	6,755,377	52.4	6,557,441	45.6	197,936	3.0
	공 무 원	4,515,670	35.0	4,424,899	30.7	90,771	2.0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927,004	7.1	850,165	5.9	76,839	9.0
	사 립 학 교	1,312,701	10.1	1,282,377	8.9	30,324	2.3
경	상 비	1,154,369	8.9	1,034,991	7.2	119,377	11.5
	교육행정기관 운 영 비	39,303	0.3	36,425	0.2	2,877	7.9
	학 교 운 영 비	1,115,065	8.6	998,566	6.9	116,499	11.6
사	업 비	3,725,283	28.9	4,053,988	28.2	△328,704	△8.1
	교 육 사 업 비	2,674,728	20.7	2,774,757	19.3	△100,029	△3.6
	시 설 사 업 비	1,050,554	8.1	1,279,230	8.9	△228,675	△17.8
재	무 활 동	1,236,491	9.5	1,576,889	10.9	△340,398	△21.5
	지 방 채 등 상 환	52	—	52	—	—	—
	B T L 상 환	—	—	103,980	0.7	순감	순감
	기 금 전 출 금	1,236,439	9.5	1,472,857	10.2	△236,418	△16.0
예	비 비 및 기 타	20,000	0.1	1,149,709	8.0	△1,129,709	△98.2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23년도 예산안의 특징

(1) 세입예산 검토개요

- '23년도 세입예산안은 12조 8,915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2년도 최종예산 대비 총 세입규모가 △10.3%, △1조 4,814억 9,800만원 축소된 바,
- 전체 세입의 88.2%에 해당하는 이전수입의 경우, 금년도 13조 7,245억원 보다 △17.2%, △2조 3,602억 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교육부와 서울시의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에 따라 연동되어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이전수입 규모가 감소하였고,
 - 유아수 감소로 인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감소, 서울시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교육경비보조금 감소 등의 사유로 금년도 보다 감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전년도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97.2%, 1조 4,007억 7,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던 1조 663억 3,700만원 전액이 '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결과로 확인됨
 - 전년도이월금 증가로 인하여 '23년도 본예산의 외부재원 의존도가 금년도 95.5% 대비 7.3%p 낮아진 88.2%로 확인되나, 최근 5년간 외부재원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구조가 대부분의 재원을 외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외부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교육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월·불용되는 사업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외부재원의존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최종(분)예산액(A) ^{주1)}	11,836,595	11,281,084	12,202,396	14,373,020	12,891,521
이 전 수 입 총 액 (B)	10,311,151	10,187,781	11,320,594	13,724,571	11,364,362
외부재원의존도(B/A)	87.1	90.3	92.7	95.5	88.2

※ 주1) 2019년도~2021년도(결산확정액), 2022년도(최종예산액), 2023년도(본예산편성액)

(2) 세출예산 검토개요

□ '23년도 세출예산은 12조 8,915억 2,100만원을 편성한 바,

○ '23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총액 중 인건비(6조 7,553억원), 학교운영비(1조 1,150억원) 등의 경직성 경비를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4.1%, 3,173억 1,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유·초·중·고 무상급식 및 과일급식 지원(6,008억원), 학교공간 자율계획사업(1,303억원), 전자철판 설치확대(1,591억원), 학생스마트기기 '디벗'사업 확대(830억원), 초·중·고 입학지원금 지원(578억원), 학교청소 용역통합지원(357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325억원) 등 교육·시설사업비 편성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8.1%, △3,287억 4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최근 교육부와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 재원을 전환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바, 향후 세입환경의 유동성에 대비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고정경비의 증가 추세와 교육복지,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개선,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새로운 세출 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제2조 계속비사업,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명시이월사업,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제6조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제7조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명시이월(제4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23년도는 금년도 보다 523건, 2,562억 3,000만원 증가된 660건, 3,286억 7,9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채발행 한도액(제5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2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9,628억 2,500만원으로 산정하여 교육부에 통보하고 '23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나, '23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일시차입금(제6조) 최고액**은 '2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의 10%인 1조 2,891억 5,200만원으로 설정하여 제출된 바,
 - 일시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20년 이후) 일시차입금이 운용된 사례는 없음

- **예산의 전용(제7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3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중 제7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전용의 조건을 열거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용(제8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각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바,
 -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공무원 보수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제9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중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목적지정지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단서를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3.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2조 8,915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4조 3,730억 2,000만원) 대비 △10.3%, △1조 4,814억 9,8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표 2-2〉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전 년 대 비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합	계	12,891,521	100.0	14,373,020	100.0	△1,481,498	△10.3
이	전 수 입	11,364,362	88.2	13,724,571	95.5	△2,360,208	△17.2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7,184,206	55.7	8,573,257	59.6	△1,389,050	△16.2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6,672,481	51.7	7,918,257	55.1	△1,245,776	△15.7
	보 통 교 부 금	6,390,221	49.6	7,589,589	52.8	△1,199,368	△15.8
	특 별 교 부 금	119,506	0.9	166,351	1.2	△46,844	△28.2
	증 액 교 부 금	162,753	1.3	162,317	1.1	436	0.3
	국 고 보 조 금	21,224	0.2	98,658	0.7	△77,433	△78.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0,500	3.8	556,340	3.9	△65,839	△11.8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172,089	32.4	5,134,202	35.7	△962,112	△18.7
	법 정 이 전 수 입	4,138,184	32.1	4,846,661	33.7	△708,477	△14.6
	지 방 세 수 입	3,994,217	30.9	4,717,802	32.9	△723,585	△15.3
	학교용자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0.0	1,995	0.0	△7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297	0.9	102,609	0.7	13,687	13.3
	교육급여보조금	10,424	0.1	9,219	0.1	1,204	13.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5,258,097	0.1	15,033	0.1	224	1.5
	비 법 정 이 전 수 입	33,905	0.3	287,541	2.0	△253,635	△88.2
	기 타 이 전 수 입	8,066	0.1	17,111	0.1	△9,045	△52.9
자	체 수 입	126,383	1.0	177,109	1.2	△50,725	△28.6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318	0.0	1,195	0.0	122	10.3
	행 정 활 동 수 입	5,341	0.0	4,347	0.0	994	22.9
	자 산 수 입	33,573	0.3	22,143	0.2	11,429	51.6
	이 자 수 입	11,819	0.1	5,607	0.0	6,212	110.8
	기 타 수 입	74,331	0.6	143,816	1.0	△69,484	△48.3
기	타	1,400,774	10.9	471,339	3.3	929,435	197.2
	전 년 도 이 월 금	1,385,344	10.7	461,269	3.2	924,075	200.3
	금 융 자 산 회 수	15,430	0.1	10,069	0.1	5,360	53.2

(1) 중앙정부이전수입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임
- '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6조 3,902억 2,100만원으로 통보된 바, 금년도 확정교부액(5조 6,465억 3,100만원) 대비 13.1%, 7,436억 9,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재원의 8.8%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 2-3〉 20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 육 부 재 원 규 모 (A)	2 0 2 3 년 도		2 0 2 2 년 도	증 감 (D=B-C)	증 감 륜 (E=D/C)
		예정교부액 (B)	구 성 비 (B / A)	확정교부액 ^{※1)} (C)		
보 통 교 부 금	72,503,361	6,390,221	8.8	5,646,531	743,690	13.1

※ 주1)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1조 3,142억 9,500만원) 및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 추가교부액(6,287억 6,200만원) 제외

- '23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11조 7,981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1.9%, 1조 2,559억 5,100만원 증가한 것이며, 기준재정수입액은 5조 4,079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0.4%, 5,125억 7,4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2-4〉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 감 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①-②+③)		6,390,221	5,646,531	743,690	13.1
기 준 재 정 수 요 액 ①		11,798,149	10,542,198	1,255,951	11.9
기 준 재 정 수 입 액 ②		5,407,927	4,895,353	512,574	10.4
감사결과 반영 및 정정교부액③		0	△312	△312	△100

○ 기준재정수요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 기준재정수요액은 금년도 대비 11.9%, 1조 2,559억 5,100만원 증가한 11조 7,981억 4,900만원으로 확인됨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중 학급·학생·교직원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 및 단위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유아교육비 등도 증가하게 되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기침체 및 지방교육재정 축소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기준재정수요에 산정하지 못한 AI 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할 있도록 재정안정화지원 항목이 신설되어 1조 5,762억 4,700만원이 추가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기준재정수요액 중 자체수요의 재정집행효율화지원은 '21년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률·불용률 관련 패널티로 △110억원 감액 반영되었고, '22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비율 인센티브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률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 2023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세부 산정현황

(단위 : 백만원, %)

측정항목	2023년도 예정교부액	2022년도 확정교부액	증 감	증감률	산 정 내 용
합 계	11,798,149	10,542,198	1,255,951	11.9	· '22년 대비 '23년 교부금산정기 준 학교 수 대안학교 포함 총 20개교 증가
교직원인건비	6,649,475	6,574,919	74,556	1.1	· 직전 2개년 치우개선율('21년도: 0.9%, '22년도: 1.4%)등 반영
학교운영비	1,921,625	1,818,600	103,025	5.6	· 대규모학급·학생당 단위비용 1.2배 산정 · 교과교실사업비 및 추가운영비 (853억 3,000만원)반영
교육행정부	105,266	128,185	△22,919	△17.8	· 학생 수 및 교직원수 감소 · '22년도 지방선거경비 삭감
교육복지 지원비	250,393	225,587	24,806	11.0	· 지역간·계층간 균형교육비 산정액 247억원 증액
교육기관 등 시설비	869,810	835,603	34,207	4.0	·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증액 (8,404억 4,200만원) ·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와 공립 유 치원 신증설비 증액(293억 6,800만원)
유아교육비	88,922	74,607	14,315	19.1	·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455억 8,500만원 ·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433억 3,600만원
방과후학교 사업비	84,527	94,307	△9,780	△10.3	· 방과후학교지원 113억 9,900만원 · 자유수강권지원 150억 6,000만원 · 초등돌봄교실 지원(시설비 포함) 580억 6,800만원 등
고교무상 교육지원비	182,701	175,890	6,811	3.8	· 입학금·수업료 1,362억 5,700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374억 2,600만원
재정결합 전	1,649,311	579,641	1,069,670	184.5	· 지방채 상환 434억 7,900만원 · BTL 임대료 지급 관련 민자사업 지급금 295억 8,500만원 · 재정안정화지원 1조5,762억4,700만원
자체노력 수요	△3,884	34,854	△38,738	△111.1	·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 항목 산정분 51억 1,500만원 반영 · 재정집행효율화지원 100억 감액

○ 기준재정수입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년도(4조 8,953억 5,300만원) 대비 10.4%, 5,125억 7,400만원이 증가한 5조 4,079억 2,700만원으로 산정된 바,

- 이는 기준재정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23년도 96.6%)을 차지하는 지방세액의 경우 전전년도('21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최근 3년('19~'21)간의 평균 증감률과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19~'21년 지방세 수입 증가 폭이 커 평균 증감률의 50%만 반영하였음에도 금년도 기준재정수입 대비 10.7%, 5,057억 6,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의 예정교부통지에 따른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①당해연도 확정교부액 통지에 의한 조정, ②전년도 결산액에 따른 정산차액 교부, ③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교부금 증액 편성 등 수 차례 교부액 증감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바,

○ 지난 '20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대비 △2,056억원이 최종 감액 교부되었고, '21년도에는 8,545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22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액의 44.5%에 달하는 2조 3,376억원이 회계연도 중에 증액 교부된 사례가 있어,

- 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금의 안정적 교부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에 요구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6〉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 편성액 (A) ^{주1)}	보통교부금 추가편성현황			최종예산 편성액 (B)	본 예산 대비	
		확정교부 추가분 ^{주2)}	지난연도 정산분 ^{주3)}	추경편성 추가분 ^{주4)}		증감액 (C=B-A)	증감률 (C/A)
2022년	5,251,973	394,558	628,762	1,314,295	7,589,589	2,337,615	44.5
2021년	4,933,216	31,169	84,403	738,958	5,787,747	854,530	17.3
2020년	5,109,331	25,229	4,165	△235,075	4,903,651	△205,681	△4.0

- ※ 자료근거 : 2020~2022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6149('21.10. 8),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주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20('22. 2.25),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주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99, ('22. 4. 8),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
주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918, ('22. 6. 3), "2022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

〈표 2-7〉 20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측 정 항 목		2023년도 예정교부액	2022년도 확정교부액	증 감	증 감 률
보 통 교 부 금 (㉠ - ㉡ + ㉢)		6,390,221	5,646,531	743,690	13.1
기 준 재 정 수 요 ㉠		11,798,149	10,542,198	1,255,951	11.9
	교 직 원 인 건 비	6,649,475	6,574,919	74,556	1.1
	학 교 운 영 비	1,921,625	1,818,600	103,025	5.6
	교 육 행 정 비	105,266	128,185	△22,919	△17.8
	교 육 복 지 지 원 비	250,393	225,587	24,806	11.0
	교 육 기 관 등 시 설 비	869,810	835,603	34,207	4.0
	유 아 교 육 비	88,922	74,607	14,315	19.1
	방 과 후 학 교 사 업 비	84,527	94,307	△9,780	△10.3
	고 교 무 상 교 육 지 원 비	182,701	175,890	6,811	3.8
	재 정 결 합 보 전	1,649,311	579,641	1,069,670	184.5
	자 체 노 력 수 요	△3,884	3,4854	△38,738	△111.1
	학교학급통합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1000	—	1,000	순증
	학 교 신 설 민 관 협 력 확 대	—	30,270	△30,270	△100.0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5,115	3,584	1,531	42.7
	재정집행효율화지원(이월및불용률)	△11,000	—	△11,000	△100.0
	재정집행효율화지원(상반기예산집행비율)	1,000	1,000	—	—
기 준 재 정 수 입 ㉡		5,407,927	4,895,353	512,574	10.4
	법 정 전 입 금	5,225,226	4,719,463	505,763	10.7
	지 방 교 육 세	2,339,602	2,210,953	128,649	5.8
	시 도 세	2,417,080	2,122,431	294,649	13.8
	담 배 소 비 세	302,322	238,041	64,281	2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297	107,385	8,912	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정산분)	4,808	△4,775	9,583	△200.6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	36,228	36,541	△313	0.8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 보전분	8,887	8,887	—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	—	—
	고 교 무 상 교 육 증 액 교 부 금	165,301	162,317	2,984	1.8
	고 교 무 상 교 육 전 입 금	17,400	13,573	3,827	28.2
감 사 결 과 반 영		—	△1,312	1,312	△100.0
정 정 교 부 액 ㉢		—	1,000	△1,000	△100.0

※ 자료근거 : 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187 ('22.10. 7),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②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220 ('22. 2.25),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304 ('22.11. 4)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①국가시책사업, ②지역교육현안, ③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자원인 바,
- 사전 통보된 13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1,195억 6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표 2-8〉 2023년도 특별교부금 예정교부액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사 업 수	편 성 액	사 업 수	편 성 액	사 업 수	편 성 액
특별교부금	133	119,506	239	166,351	△106	46,844

- 다만, 특별교부금의 경우 목적이 지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이후 시달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액이 시달된다 하더라도 편성액과 실교부액 차이로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차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활한 예산 편성과 사업집행을 위해 소요예산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3) 증액교부금

- 증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3년도에는 1,627억 5,300만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것임
-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증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48.0%가 교부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액중 나머지 47.5% 1,610억 5,700만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5%, 152억 5,800만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음

〈표 2-9〉 20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

부 담 주 체	부 담 액	부 담 륜	비 고
합 계	339,068	100	
국 가	162,753	48.0	증액교부금
교 육 청	161,057	47.5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
자 치 단 체	15,258	4.5	서울시 50%, 자치구 50% 분담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7984 ('22. 9.26), “20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람”

- 그러나, 관련 규정은 '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5년 한시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미리 협의하여 정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특별회계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예산에서 정하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전입금임
- '23년도 세입예산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4,90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유아수 감소(△1만 6,241명)로 인해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1.8%, △658억 3,900만원 감소된 규모로 확인됨
 - 다만, 금번 예산안은 관련 고시에 따른 단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22년 12월 말 “23년도 교육부 고시”가 제정되면 새로운 단가기준에 따라 증액분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0〉 2023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합 계		490,500	556,340	△65,839	△11.8%
	유 아 학 비	209,930	217,151	△7,220	△3.3%
	보 육 료 ^{주1)}	280,569	339,188,	△58,618	△17.2%

※ 주1)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억 4,700만원이 포함됨

- 다만, 동 전입금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한시법에 의한 것으로, 현재 특별법 일몰 연장(또는 폐지)이 추진되고 있는 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정부예산안과 함께 연동될 것으로 사료됨

5) 국고보조금

- '23년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212억 2,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8.5%, △774억 3,3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2-11〉 2023년도 「국고보조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국 고 보 조 금	21,224	98,658	△77,433	△78.5

-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별도 교부하는 재원으로 '22년도의 경우, 15개 사업 986억 5,800만원이 편성된 바, '23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시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세입·세출예산에 우선 반영 하고, 차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표 2-12〉 2023년도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편 성 근 거
합	계	21,224	
참여협력담당관	교 육 급 여	15,63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603('22. 9. 8)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전 국 소 년 체 육 대 회	36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3482('22. 9.14)
	초 등 스포츠강사지원	2,116	
	학 교 흡 연 예 방 교 육	3,108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218('22. 9. 5)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23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1,720억 8,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교육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상 전출금 등에 대한 편성안을 통보 받아 이를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13〉 2023년도 「자치단체이전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전 년 대 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합		계	4,172,089	5,134,202	△962,112	△18.7
법 정 이 전 수 입			4,138,184	4,846,661	△708,477	△14.6
	지 방 세 소 계		3,994,217	4,717,802	△723,585	△15.3
	시 도 세	지 방 교 육 세	1,926,002	2,224,856	△298,854	△13.4
		담 배 소 비 세	261,992	281,201	△19,209	△6.8
		시 · 도 세 (지 방 세)	1,761,108	2,166,628	△405,520	△17.7
		균 특 회 계 시 도 전 환 사 업 보 전 분	36,228	36,228	0	0.0
		국 가 의 지 방 이 양 사 업 보 전 분	8,887	8,887	0	0.0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1,995	△7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297	102,609	13,687	13.3
교 육 급 여 보 조 금			10,424	9,219	1,204	13.1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5,258	15,033	224	1.5
비 법 정 이 전 수 입			33,905	287,541	△253,635	△88.2
	서 울 시		21,125	183,467	△162,342	△88.5
	자 치 구		12,780	104,073	△91,293	△87.7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①지방세수입, ②학교용지부담금, ③교육급여보조금, ④무상교육경비전입금,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으로 '23년도에는 4조 1,381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4〉 2023년도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담 주체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4,138,184	4,846,661	△708,477	△14.6
서울시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1,995	△7	△0.4
	교육급여보조금		10,424	9,219	1,204	13.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5,258	15,033	224	1.5
	지방세	소 계	3,994,217	4,717,802	△723,583	△15.3
		지방교육세	1,926,002	2,224,856	△298,854	△13.4
		담배소비세	261,992	281,201	△19,209	△6.8
		시·도세 (지방세)	1,761,108	2,166,628	△405,520	△17.7
	전라남도	균특회계시도전환 사업보전금	36,228	36,228	0	0.0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보전분	8,887	8,887	0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포함)		116,297	102,609	13,687	13.3

- **지방세 수입**은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전입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5.3%, △7,235억 8,500만원 감액된 3조 9,942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금년 8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전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8,313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전출한 것에 원인이 있으나, 금년도 본 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2.7%, 1,077억 5,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재정분권 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과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금에 대하여 '시도세전입금' 으로 세입과목을 정하고 있으나, 시도세와는 목적과 재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향후 세입내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세입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예산과목 신설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5〉 2023년도 지방세 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 0 2 2 년 도		2 0 2 2 년 도	
			본 예 산 (B)	최 종 예 산 (C)	증 감 액 (A - C)	증 감 륜 (A / B)
합	계	3,994,217	3,886,459	4,717,802	△723,585	△15.3
지 방 교육세	소 계	1,926,002	1,966,277	2,224,856	△298,854	△13.4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1,926,002	1,966,277	1,966,277	△40,275	△2.0
	'21년도 정산분	—	—	258,579	△258,579	—
담 배 소비세	소 계	261,992	257,188	281,201	△19,209	△6.8
	담 배 소 비 세 전 입 금	261,992	257,188	257,188	4,803	1.8
	'21년도 정산분	—	—	24,012	△24,012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2022년도	
			본 예산 (B)	최종 예산 (C)	증감액 (A - C)	증감률 (A / B)
시도세 전입금	소 계	1,806,223	1,662,994	2,211,743	△405,520	△18.3
	시세전입금	1,761,108	1,626,814	1,626,814	134,293	8.2
	'21년도 정산분	—	—	539,814	—	—
	균특회계시도 전환사업보전분	36,228	36,180	36,228	—	—
	국가의지방이양 사업보전분	8,887	—	8,887	—	—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중 시·도의 부담분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에 해당하는 19억 8,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표 2-16〉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과 목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 - B)	증감률
학 교 용 지 매 입 비 시 도 부 담 금	1,987	1,995	△7	△0.4

- 관련 법령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지난 '20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부담금 전액을 전출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는 전출금을 처리할 적정한 세입과목이 없어 서울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으로 세입처리한 사례가 있으나,

- 우리 위원회가 '21년도 예산안 심사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부에 적정 세입과목 편성을 건의할 것을 요구한 바, '23년도 예산안 부터 교육부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을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으로 명칭변경하고 과목 설명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 6%)중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안분액과 정산분 1,162억 9,700만원에 반영한 것임

〈표 2-17〉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과 목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116,297	102,609	13,688	13.3

- **교육급여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중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04억 2,400만원에 반영한 것임

〈표 2-18〉 2023년도 「교육급여보전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국 비	지 자 체			계
		시 비	구 비	소 계	
교 육 급 여 보 전 금	15,636	7,297	3,127	10,424	26,061

※ 재원분담 : 국고보조금 60%, 광역자치단체 28%, 기초자치단체 1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0736 (22. 9. 2), “23년 교육급여 지원사업 지방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52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각각 76억 2,900만원이 전입되는 것임

〈표 2-19〉 2023년도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국 가	교육청	지 자 체			계
			시 비	구 비	소 계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2,753	161,057	7,629	7,629	15,258	339,068

- ※ 재원분담 : 국가 48%, 교육청 47.5%, 지자체 4.5%(서울시 2.25%, 자치구 2.25%/25)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7984 ('22.9. 26), “'23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림”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339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 전입금(211억 2,500만원)과 자치구 전입금(127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비법정이전수입**이 2,875억 4,100만원 편성 된 바,
 - '23년도중 비법정이전수입이 감교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세입예산에 대한 유동성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됨

〈표 2-20〉 2023년도 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 0 2 2 년 도		2022최종예산대비		비 고
		본 예 산	최종예산(B)	증감(A-B)	증감률	
합 계	33,905	57,396	287,541	△253,635	△88.2	
서울시 전입금	21,125	44,604	183,467	△162,342	△88.5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 203억 400만원 ●도서관운영비지원 : 7억 7,700만원 ●지방이양사무지원 : 43백만원
자치구 전입금	12,780	12,791	104,073	△91,293	△87.7	●입학준비금지원(25개구) : 127억 8,000만원

※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대안교육기관 지원(70억원) 미편성(관련 조례안 발의 중)

○ 서울시전입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보조금) 203억 400만원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7억 7,7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조례상 전출금(비법정전출금)의 경우, 서울시는 ①일반교육경비보조 6개 사업 273억 400만원, ②특별교육경비보조 2억 7,500만원 총 275억 7,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개 사업 211억 2,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3년도 예산안에는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중 ①대안교육기관 지원(70억원)과 ②특별교육경비보조(2억 7,500만원) 2개 사업, 총 72억 7,500만원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경우**, '22년 1월부터 시행된 관련 법령은 대안 교육기관 설립·운영시 등록의무가 교육감에게 전속되기에,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 신고와 지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나, '예산의 법정의결시한' 이후인 12월 19일 에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되어 관련 조례가 의결된 이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소요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판단됨
 - **특별교육경비보조의 경우에도** 대상학교 선정 및 서울시와의 협의 완료 후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편성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공공도서관 운영비지원은 전년 대비 △66.2%, △15억 2,200만원 감액된 7억 7,700만원을 편성한 바, 서울시가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소 당 지원단가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06년 최초 지원이래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2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공공도서관혁신운영비' 7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도서관 운영재원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사례가 있어 안정적으로 지원금이 보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1〉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증 감	지 원 대 상
계		27,579	51,984	△24,405	
일반교육경비		27,304	46,786	△19,482	
1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600	-	●특성화고 80개교
2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660	-	●1개원
3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1,000	-	●초·중·고 50개교
4	입학준비금	17,268	17,080	188	●초·중·고·특수·각종 신입생 21만3천명
5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776	-	순증	●초·중·고 330개교
6	대안교육기관 지원	7,000	-	순증	
-	학교체육관 건립	-	2,400	△2,400	
-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	7,300	△7,300	
-	학교 CCTV 교체 지원	-	1,535	△1,535	
-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	1,346	△1,346	
-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	1,080	△1,080	
-	미래형 교실 구축	-	940	△940	
-	학교 학습공간 시설개선 지원	-	2,000	△2,000	
-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	700	△700	
-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 사업	-	4,000	△4,000	
-	학교시설물 개방우수학교시설보수비 지원	-	2,100	△2,100	
-	지역사회 결합형 학교 지원	-	1,125	△1,125	
-	스포츠·다와 함께하는 독서진흥 캠페인	-	500	△500	
-	유치원 아이 놀터 조성	-	2,000	△2,000	
-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	420	△420	
특별교육경비		275	5,198	△4,92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304 ('22.11. 4)

※ 본예산안 미편성 사업 : 대안교육기관 지원(7,000백만원)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

- 아울러 조례상전출금과 관련하여 현행 관련 조례는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보통세의 0.15%로 계상한 바, 전년대비 △46.9%, △244억 5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유동성을 감소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2〉 최근 5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편성기준액 ^{주1)} (A)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통보액 ^{주2)}		최 중 편 성 액	
		금 액 (B)	비율(B/A)	금 액 (C)	비율(C/A)
2 0 2 3	18,271,306	27,579	0.15		
2 0 2 2	16,880,579	51,984	0.32	51,984	0.31
2 0 2 1	14,489,874	47,376	0.33	54,376	0.38
2 0 2 0	14,496,136	53,300	0.37	67,299	0.46
2 0 1 9	13,244,792	53,300	0.40	53,300	0.40

※ 주1)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 총액

주2) 서울시의 조례상전출금 세출예산 편성액 기준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304 ('22.11. 4)

- 그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예산지원이 '22년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분 4,380만원을 서울시가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 편성하여 법정전출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자치구전입금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 대한 25개 자치구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575억 6,000만원(초등 126억 8,000만원, 중등 448억 8,800만원)중 초등 사업비의 30%, 38억 400만원, 중등 사업비의 20%, 89억 7,6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임

〈표 2-23〉 2023년도 「입학준비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교 육 청	지 자 체			계
			서 울 시	자 치 구	소 계	
입학준비금	초 등	5,072	3,804	3,804	7,608	12,680
	중 등	22,440	13,464	8,976	22,440	44,880

※ 재원분담 : (초등) 교육청 40%, 시 30%, 구 30%, (중등) 교육청 50%, 시 30%, 구 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0188 ('22. 8.22), "23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예산 내역 알림"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기타협력사업비, 전입금으로 80억 6,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4〉 2023년도 「기타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A)	2022년 최종예산(B)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합 계	8,066	17,111	△9,045	△52.8
민 간 이 전 수 입	8,035	12,579	△4,543	△36.1
기 부 금	0	2,965	△2,965	△100.0
기 타 지 원 금	5,576	7,155	△1,578	△22.0
기타협력사업비	2,459	2,459	0	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1	4,532	△4,501	△99.3
전 입 금	31	4,532	△4,501	△99.3

- 기타지원금과 기타협력사업비는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지원금 55억 7,600만원, ② 농협금고 협력사업비 24억 5,900만원 편성한 것임
- 전입금에는 중등교원 자격연수 위탁 교육비 및 지방공무원 연수생 위탁연수비 3,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263억 8,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5〉 2023년도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26,383	177,109	△50,725	△28.6
	교수학습활동수입	1,318	1,195	122	10.3
	행정활동수입	5,341	4,347	994	22.9
	자산수입	33,573	22,143	11,429	51.6
	이자수입	11,819	5,607	6,212	110.8
	기타수입	74,331	143,816	△69,484	△48.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188 ('22.10.28)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문화강좌교실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0.3%, 1억 2,200만원 증가한 13억 1,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행정활동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물 사용료 수입 및 일상회복에 따른 각종 체육시설 및 도서관·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료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2.9%, 9억 9,400만원 증가한 53억 4,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의 토지 임차 및 매각 계획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51.6%, 114억 2,900만원 증가한 335억 7,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기타수입등, 지난연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48.3%, △694억 8,400만원 감소한 743억 3,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기타수입등중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21년도에 신설된 교육부 세입예산 과목기준으로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564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22년도에 신규편성된 과목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이후 국가, 시·도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지난연도 정산분에 대한 반납금액 등을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별도의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23년도에도 교육급여 등 국가 및 시비의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추계를 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향후 적정 세입이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과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세입재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간 정산을 위한 반납액임에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기타수입)이 확대되는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부에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6〉 2023년도 「기타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비 고
합	계	74,331	143,816	△69,484	△48.3	
제	재 금 수 입	771	905	△134	△15	●과태료 컨설팅,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인한 장기체 납자 감소 예상 등 수입 예 상액 반영
기	타 수 입 등	73,118	140,594	△67,475	△47.9	
	생산물매각대	—	1	△1	△100.0	
	그 외 수 입	16,653	36,383	△19,730	△54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56,465	104,209	△47,743	△46	●'2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 해'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신설
지	난 연 도 수 입	441	2,315	△1874	△81	●체납 세입 관련 증가산금 발생분 및 징수 계획 등 수입 예상액 반영

※ 자료근거

- 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 p.43~p.49
-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188('22.10.28)

(5) 기타

- 세입예산중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로 1조 4,007억 7,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7〉 2023년도 기타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400,774	471,339	929,435	197.2
	전년도이월금	1,385,344	461,269	924,075	200.3
	금융자산회수	15,430	10,069	5,360	53.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p.7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된 내부유보금 1조 663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22년도 징수전망액과 지출추정액을 근거로 산출된 순세계잉여금 1조 3,853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28〉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 세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반 영 액			
	금 액 ^{주1)}	전 년 대 비		본 예 산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증 감 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2022	1,426,797	965,528	209.3	1,385,344	97.0		
2021	461,269	134,960	41.3	324,342	70.3	136,927	29.6
2020	326,309	△54,834	△14.4	280,604	86.0	45,705	14.0
2019	381,142	△388,720	△50.5	532,349	139.7	△142,207	△37.3

※ 주1) 2019~2021회계연도는 결산확정액, 2022회계연도는 결산전망액기준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188 ('22.10.28)

〈표 2-29〉 2022회계연도 결산 전망(추정)액

<'22.10.20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B) (수납률)	세출결산액(C) (집행률)	잉여금차인잔액						
			(B-C)	기 존 채무상환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4,668,231	14,720,658	12,729,663	1,990,994	0	273,605	290,592	0	0	1,426,797
	100.4%	8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188 ('22.10.28)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22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23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22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모두 완료되는 '23년 2월 10일 이후 '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적용 사례일 수 있어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실적 측면이 반영되도록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을 정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다른 편성사례로 사료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서는 동일한 법지위를 갖는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금융자산회수**는 융자금원금회수(150억 8,000만원)과 보증금회수(3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융자금원금회수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금(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에 대한 회수액’임

4.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3년도 성인지 예산은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바,
- 총 39개 사업, 2,380억 2,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22년도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총 36개 사업, 1,773억 9,800만원) 보다 3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34.1%, 606억 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2-30〉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 업 수			예 산 규 모			
		2023년도 ①	2022년도 ②	증 감 ①-②	2023년 예산액(A)	2022년 예산액(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39	36	3	238,029	177,398	60,631	34.1
필 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2	12	-	81,876	72,727	9,148	12.5
	성별영향 평가사업	6	4	2	8,200	2,245	5,955	265.2
	교육부 지정사업	17	17	-	144,715	99,868	44,847	44.9
선택	자체선정사업	4	3	1	3,237	2,557	680	26.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8

○ '23년도 성인지 예산의 사업분류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22년도 36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금년도 사업수와 동일하며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학교예술교육지원'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으로 2개 사업('협력종합예술활동', '적극행정정책추진및운영')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지정사업**의 경우, 금년도 사업수와 사업명이 동일하며,
- **자체선정사업**의 경우, 교육청이 자체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여, '오디세이학교운영', '민주시민교육강화',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주민참여예산운영' 총 4개 자체선정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 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는 바,
-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반영 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한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3년도에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교육 구현’이라는 임무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총 5개의 전략목표, 25개의 성과목표, 80개의 단위과제 및 9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표 2-31〉 2023년도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본 예 산 (B)	증 감 (A - B)
성 과 계 획	전 략 목 표 수	5	5	-
	성 과 목 표 수	25	15	10
	성 과 지 표 수	91	88	3
	단 위 과 제 수	80	79	1
예 산 액	총 예 산 액 (㉠)	12,891,521	10,588,635	2,302,886
	단위과제예산(㉡)	3,654,158	2,950,524	703,634
	설정비율(㉡/㉠)	28.3	27.8	30.5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3조 6,541억 5,800만원으로 '22년도(2조 9,505억 2,400만원)보다 7,03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예산액은 9조 2,373억 6,200만원으로 '22년도(7조 6,381억 1,000만원) 보다 1조 5,992억 5,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2〉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3년도 예산안 (C)	'22년도 본예산 (D)	증 감 (C - D)	재원비중
총 계 (A + B)		12,891,521	10,588,635	2,302,886	100.0
성 과 관 리 대 상 사 업	소 계 (A)	3,654,158	2,950,524	703,634	28.3
	전략목표 I	468,669	376,312	92,357	3.6
	전략목표 II	892,672	987,928	△95,255	6.9
	전략목표 III	289,848	41,557	248,291	2.2
	전략목표 IV	1,146,945	1,354,061	△207,116	8.9
	전략목표 V	856,022	190,664	665,358	6.6
성 과 관 리 비대상사업	소 계 (B)	9,237,362	7,638,110	1,599,251	71.6
	인력운영비	6,755,377	6,528,379	226,998	52.4
	기본운영경비	1,225,493	969,028	256,465	9.5
	지방채상환	52	52	—	—
	BTL사업비	—	102,392	△102,392	—
	예비비 등	1,256,439	38,258	1,218,180	9.7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p.7

□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며,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3년도 성과지표는 총 91개로,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90개는 정량지표, 1개는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내용에 따라 투입·과정지표는 9개(9.8%), 산출·결과지표는 82개(90.1%)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3〉 2023년도 성과지표 설정 및 분류 현황

(단위 : 개, %)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A)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5	91	90	1	3	6	41	41
	(100.0)	(98.9)	(1.1)	(3.3)	(6.5)	(45.0)	(45.0)

※ ()은 성과지표수(A)에 대한 구성비

- 다만, 정성지표로 분류된 '23년도 신규지표인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학습 역량 신장 인식도”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디벗」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측정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23년도는 3점, '24년도는 3.2점, '25년도는 3.5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 이는, “인식도”라는 성과지표가 내포하는 의미가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는 응답자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성지표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나,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결과를 측정산식에 따라 구체화된 수치로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정량지표”로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와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부적정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검토하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한 지표가 확인됨

- 특히,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달성률”의 경우 '21년도 신규 성과지표로 2개년도 연속 실적치가 100%임에도 '23년도 목표치를 87%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성과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4A〉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사례

성 과 지 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1	'22	'23	'24	'25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 상담 지원률	목표	97%	101%	101%	101%	101%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14.3%	100%	—	—	—	
자유학기(년)제 연수 실적	목표	96%	100%	100%	100%	1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96%	100%	—	—	—	
진로체험 학생 참여 비율	목표	100%	102%	102%	102%	102%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	102%	—	—	—	
예술중점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목표	4.5점	4.5점	4.5점	4.5점	4.5점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4.37점	4.5점	—	—	—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목표	87%	90%	90%	90%	9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89.66%	90%	—	—	—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학습공동체	목표	180팀	200팀	200팀	200팀	200팀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88팀	212팀	—	—	—	

〈표 2-34B〉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사례

성 과 지 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서비스 만족도	목표	90%	90.5%	91%	91.5%	92%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2%	93%	—	—	—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률	목표	90%	95%	80%	85%	9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0%	97%	—	—	—	
목적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참여	목표	95%	95%	95%	95%	95%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95%	95%	—	—	—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	목표	1.9%	1.9%	1.9%	1.9%	1.9%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1.76%	1.9%	—	—	—	
불법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 공무원 자담독 살사건수	목표	685건	690건	695건	700건	705건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020건	857건	—	—	—	
언론기사의 광고 가치 증가율	목표	100.5%	100.5%	100.6%	100.7%	100.8%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00.9%	100.7%	—	—	—	
전보대상자 근무희망 반영율	목표	79%	79%	79%	79%	79%	4 개 연 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79%	79%	—	—	—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률	목표	89%	89.5%	90%	90%	9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00.9%	110%	—	—	—	
창의융합형 과학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목표	86%	88%	89%	90%	9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7.1%	97.1%	—	—	—	
정보화 전문연수 운영 과정 증가율	목표	103%	105%	109%	109%	111%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28%	120%	—	—	—	

〈표 2-34C〉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사례

성 과 지 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1	'22	'23	'24	'25	
교직원 및 학부모 나이스 만족도	목표	93.7%	93.9%	94.5%	95.0%	95.3%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4.9%	95.8%	—	—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률	목표	70%	70%	70%	70%	70%	4개연도 이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70%	70%	—	—	—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달성률	목표	86%	87%	87%	87%	87%	4개연도 이상 목 표 치 동 일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00%	100%	—	—	—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목표	96%	96%	96%	96%	96%	4개연도 이상 목 표 치 동 일
	실적	미실시	미실시	—	—	—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만족도	목표	53%	60%	61%	62%	63%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63%	63%	—	—	—	

3)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2년도 세출예산중 연도말 예산교부,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660건, 3,286억 7,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명시이월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3.7%, 2,562억 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5〉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명 시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비 율	증 감	증 감 률
2 0 2 2	14,373,020	660	328,679	2.3	256,230	353.7
2 0 2 1	11,815,292	137	72,448	0.6	8,225	12.8
2 0 2 0	10,768,438	129	64,223	0.6	△121,310	△65.4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명시이월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 353.7%, 2,562억 3,000만원 증가한 것은 연도중 실시하는 수시 집행상황 검토가 실효성 있는 점검수단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집행실적 및 향후 지출계획을 점검하여 이월이나 불용될 예산을 추경 등을 통해 조정하여 한정된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만 우선편성하여 명시이월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는 ①연도말 예산교부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3,286억 7,900만원)의 46.9%, 1,541억 3,200만원, ②**사업추진중 장애발생** 24.0%, 789억 3,600만원, ③**사업비 부족** 5.3%, 174억 5,400만원, ④**기타** 23.8%, 781억 5,600만원으로 확인됨

〈표 2-36〉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① 사업추진기간부족	② 사업추진시 장애발생	③ 사업비부족	④ 기 타
건 수	660	386	90	78	106
이 월 액	328,679	154,132	78,936	17,454	78,156
구 성 비	100	46.9	24.0	5.3	23.8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둔촌초)**를 포함한 386건, 1,541억 3,200만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하여 예산이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 명시이월을 승인요청한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805억 3,300만원, 45건)** 중 28건, 425억 7,000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진행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7〉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56,750	154,132	
1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둔촌초)	13,231	13,231	각종 행정절차(기술자문위원회 등)로 인한 설계기간 연장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능
2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영파여중)	6,495	6,495	대상학교 사전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연도내 시설비 집행 불가능
3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대광중)	4,684	4,684	대상학교 사전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연도내 시설비 집행 불가능
4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본관 리모델링 (화장실개선 외 13개)	3,484	3,457	사전기획 및 1차설계(구조보강설계) 중으로 내년도 2차설계(구조실시설계) 후 공사 진행
5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강서고)	3,396	3,396	대상학교 사전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연도내 시설비 집행 불가능
6	컴퓨터기반학업 성취도평가지원 (평가도구 개발, 시스템 구축)	3,000	2,900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용역발주 예정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
7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대성고)	2,546	2,546	대상학교 사전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연도내 시설비 집행 불가능
8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동성고)	2,286	2,286	대상학교 사전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연도내 시설비 집행 불가능
9	서부교육지원청 노후시설및사무공간개선	1,949	1,949	추진 일정상 설계기간 및 공공건축 심의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10	변 동 초 본관외부창호개선	1,726	1,726	2차 추경 반영(9월) 예산으로 설계기간 (통합사업, 약 91일 소요) 및 입찰 공고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공사비 연도내 집행 불가능
11	양 강 중 본관 외부창호 개선	1,735	1,704	2차 추경 반영(9월) 예산으로 설계기간 (약 60일 소요) 및 입찰 공고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공사비 연도내 집행 불가능
12	미 래 산 업 과 학 고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630	1,630	간 섭 공 정 (내 진 보 강 사 업) 에 따 른 연 도 내 집 행 불 가
13	북부교육지원청 노후시설및사무공간개선	1,621	1,621	청사 전체 공사로써 설계기간 및 공기를 고려할때 2022년 내 공사(원인행위) 불가

※ 15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학생스마트기기보급**을 포함한 90건, 789억 6,300만원은 사전이행절차 또는 설계 지연 등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디벗(Digital+벗)사업인 학생스마트기기보급의 경우, '22년도 본예산에 중학교 학생스마트기기보급으로 517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3년도 지원대상을 중1·고1·고등학교교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방식도 물품구입(학교회계전출금)에서 렌탈용역(운영비)으로 변경하여 본예산 대비 △163억 5,200만원을 감액한 35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22년 10월,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사업에 대해 310억 2,000만원을 운영비에서 유형자산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23년도 예산서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1·고1·고등학교교원으로 동일하나, 지원방식의 경우, 렌탈이 아닌 물품구입(유형자산비) 830억 3,400만원과 조달수수료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외관상으로는 '22년도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사업의 예산을 유형자산(물품구매)으로 전용하고, '23년도 예산안 또한 유형자산(물품구매)으로 맞추어 사업의 **관리방식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의 의결 결과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전용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경비의 사용대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적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동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요청건은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가 무색하도록 편성예산 전액 (353억 8,2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재원만 유지하려는 사례로 사료되는 바,

- 추정 당시에는 사업방식을 렌탈로 적극 설명하고 고수하였음에도 불과 수 개월 만에 사실상 추정편성액 전액을 전용한 것은 물론 명시이월을 통해 '22년도부터 렌탈이 아닌 구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형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명시이월을 요청한 대로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명시이월사업 조서중 해당 내역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8〉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83,170	78,963	
1	학생스마트기기보급	35,382	35,382	계약절차 참관 요청 수용 및 사전이행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능
2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정의여고)	10,329	10,329	대상학교 사전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연도내 시설비 집행 불가능
3	마을결합형 학교공간 시설 개선 지원	2,000	1,850	마을결합형 학교공간 시설개선 선정교인이수중('22.8월 선정)은 내진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설계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능
4	이수초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	1,717	1,717	공유재산변경심의 신청하여 12월 심의 완료 예정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5	공릉초교 사드라이비트해소	1,620	1,574	외벽공사는 내진공사와 병행추진되어야 함. 현재 내진보강공사는 구조설계중으로 금년도내 내진설계용역만 완료 가능, 공사 발주는 내년 초에 가능
6	중목초외부창호개선	1,595	1,559	'23년 겨울방학 추진 예정이나 기간 부족하여 설계만 진행 후 공사비 명시이월
7	강동초 동관 및 본관외부창호개선	1,419	1,41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희망교로 사업 보류
8	노후교사개축(상도유치원 시설비)	1,263	1,263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상도유 주차장과 연계 설계) 고시 지연으로 설계 중지중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9	강동초 본관드라이비트해소	1,220	1,22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희망교로 사업 보류

※ 10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또한,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요청사업중 **강동송파학습도움센터와 동작학습도움센터의 시설구축 및 사무기기등 자산취득비**의 경우, 도움센터 구축장소인 오류중과 장승중의 별건 공사로 인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4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4,300만원)를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경비의 성질상 경비의 사용대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동일한 공사장소에 다른 공사 계획이 공존하고 있었다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편성하여 의회에 명시이월 요청까지 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는 명시이월에 대해 단순히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를 불용시키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사업비는 예산확보후 지출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안이기에 연도말 불용처리하고, '23년도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적법한 세출예산 운용사례로 판단되어 해당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중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9〉 강동송파학습도움센터와 동작학습도움센터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강동송파학습도움센터 시 설 구 축	16	16	강동송파학습도움센터 구축장소인 오륜중의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등
강동송파학습도움센터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4	4	
동작학습도움센터 사 무 기 기 용 품	13	13	동작관악학습도움센터 구축 장소인 장승중 식당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완공지연 (’22년 11월→’23년 8월)
동작관악학습도움센터 시 설 구 축	10	10	

4)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2023~2027)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제도임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은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교특회계 및 5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85조 1,145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전망한 바,
 - **교특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70조 3,411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0%로 전망하며, **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14조 7,734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0.0%로 '23년도 기금 재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40〉 재정규모(총계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재정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7	증가율
계	85,114,576	16,686,497	16,239,203	16,938,434	17,438,252	17,812,190	1.6
교특 회계	70,341,156	13,824,280	13,235,394	13,892,287	14,435,052	14,954,143	2.0
기금 주1)	14,773,420	2,862,217	3,003,809	3,046,147	3,003,200	2,858,047	0.0

※ 주1) 기금수입 = 당해연도 기금전입금 + 전년도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기금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202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22.11), p.23

5)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3~2027)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1년 4월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련 지침 또한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는 바,
 - 현행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공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를 제출한 바, 관련 법령에는 여전히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명시하고 있어 금년도와 동일한 형태의 “공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 이미 지난 '21년 4월, 관련 법령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행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통상적으로 관련 지침이 차용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실·국별 세부사업 검토

1) 기획조정실

□ 예비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47)

- **예비비**(예산담당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세출항목임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12조 8,915억 2,100만원)의 0.08%, 10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또한 100억원을 계상하여 총 2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 요청한 것임
 -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는 ①일반예비비 편성규모가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로서 ②관련 조례에 따라 보고된 '22년도 1~3분까지의 예비비 지출액을 고려하면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표 2-41〉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 도		증 감 (A - B)	증 감 륜
			본 예 산	최종예산(B)		
합	계	20,000	10,000	40,000	△20,000	△50.0
	일 반 예 비 비	10,000	6,000	22,000	△12,000	△54.5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	4,000	18,000	△8,000	△44.4

- 다만, 현행 관련 법령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편성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예비비 확보수준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기준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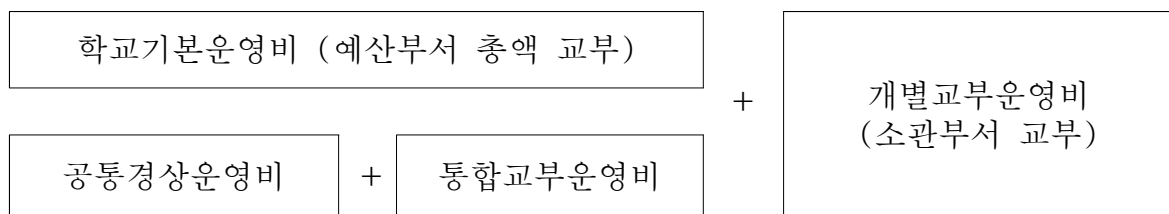
□ 공립학교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93)

■ **학교개별교부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79)

- **공립학교운영비**(예산담당관)는 서울시 관내 1,281개교에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학교기본운영비**와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개별 교부하는 **개별교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표 2-42〉 '23년도 학교운영비 편성구조



- **공립학교운영비**는 금년도 최종예산(7,492억 8,300만원)보다 12.3%, 924억 100만원 증액한 8,416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표 2-43〉 공립학교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 도		증 감 (A - B)	증 감 률
		본 예 산	최종예산(B)		
합 계	841,685	663,287	749,283	92,401	12.3
학 교 기 본 운 영 비	755,710	572,761	658,757	96,953	14.7
개 별 교 부 운 영 비	85,975	90,526	90,526	△4,551	△5.0

○ **학교기본운영비**는 ①공통경상운영비와 ②통합교부운영비를 합한 금액에 ③학교기본운영비 감액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것으로 총 7,557억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인 바,

- ①**공통경상운영비**는 공공요금、물가인상、산업안전보건 강화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대비 20% 증액한 5,314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②**통합교부운영비**는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성 사업을 정비(재분류)하고, 단위학교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학교공간 자율환경 개선 사업비”(1,005억원)를 신규 편성하여 총 2,242억 4,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가칭)학교공간 자율환경개선 사업비”는 목적성 경비로 추진되었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통합교부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단위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바,

■ 학교 현장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효과성 분석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평균 학교기본운영비는 '22년도 대비 14.4%, 7,400만원 증가되어 공립 1교당 평균 5억 8,900만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확인됨

〈표 2-44〉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2021년도 최종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755,710	658,757	633,241
지 원 학 교 수		1,281	1,278	1,251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589	515	506
	증 감 률	14.4	1.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304('22.11. 4)

○ 개별교부운영비는 금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개별교부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정비(재분류)하여 학교정보화기기보급, 혁신학교운영비지원 등 28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859억 7,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5〉 2023년도 개별교부운영비 편성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항 목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85,975	90,526	△4,551	△5.0
1	학 교 정 보 화 기 기 보 급	15,337	16,850	△1,512	△8.98
2	혁 신 학 교 운 영 비 지 원	14,810	15,050	△240	△1.5
3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학 교 지 원	10,007	10,464	△457	△4.3
4	일 반 고 교 육 역 량 강 화	9,490	9,490	0	0
5	중 등 스포츠 강 사 지 원	7,140	7,089	51	0.7
6	특 수 학 급 운 영 비	6,496	6,474	22	0.3
7	학 교 평 등 예 산 제	4,800	4,300	500	11.6
8	특수학교(통학버스운영)차량유지비지원	3,490	3,865	△375	△9.7
9	개교경비 및 개축이전경비	2,341	5,863	△3,522	△60.0
10	마 이 스 터 고 운 영 비 지 원	2,000	2,000	0	0
11	방 송 통 신 중 · 고 운 영	1,568	1,012	556	55
12	실 험 실 습 재 료 비 지 원 확 대	1,555	1,555	0	0
13	유치원특수학급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	1,519	972	547	56.3
14	교 과 교 실 제 운 영 비 지 원	850	1,353	△503	△37.2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항 목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증감(A-B)	증 감 륜
15	과 학 고 내 실 화 지 원	791	749	42	5.6
16	진 로 활 동 실 구 축	760	760	0	0
17	영 재 학 교 운 영 비 지 원	751	751	0	0
18	학교행정효율화시범학교운영	550	0	순증	순증
19	특수학교돌봄교실(종일반)지원	321	92	228	247
20	서 울 국 제 고 내 실 화 지 원	258	220	38	17.2
21	항 공 소 음 피 해 학 교 운 영 비	240	240	0	0
22	가고싶고머물고싶은학교운영비	200	200	0	0
23	맞 춤 식 진 로 교 육	195	195	0	0
24	유치원특수학급돌봄교실(종일반)지원	192	101	91	89.6
25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비지원	170	165	5	3.3
26	미 래 기 술 교 육 센 터 활 성 화	100	100	0	0
27	급 식 운 반 학 교 용 역 비 지 원	22	21	1	5
28	야 영 협 력 학 교 운 영	16	16	0	0
29	교육지원팀소속교사수업시수경감강사비 (운영비재정결함미지원2교)	0	9	순감	순감
30	영 어 교 육 내 실 화 지 원	0	565	순감	순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304('22.11. 4)

□ **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07)

- **공무원인건비**(예산담당관)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 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로서 '23년도 소요액 4조 5,156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표 2-46〉 공무원(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A - B)	증 감 륜
총 계		4,515,670	4,424,899	90,771	2.0
	보 수	3,413,187	3,466,195	△53,007	△1.5
	법 정 부 담 금	896,947	799,374	97,572	12.2
	명 예 퇴 직 수 당	131,700	100,791	30,908	30.6
	맞 춤 형 복 지 비	73,836	58,538	15,297	26.1

- **보수**의 경우, ①'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7%) 적용에 따른 증가분 및 ②'23년도 정원 증감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530억 700만원 감액한 3조 4,131억 8,7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법정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예산에 비례하는 부담금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23년도 법정부담금 효율인상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975억 7,200만원을 증액한 8,969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23년도 공립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수요에 대응하고자 1,317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1,269명분, 1,269억원, ②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0명분, 42억원, ③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 4명분, 6억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309억 8,000만원 증액한 1,317억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①기본점수 증액(70만원→90만원), ②근속점수 부여방식변경, ③출산축하점수(첫째) 신설, ④가족점수, 근속점수 상한액, 출산축하점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585억 3,800만원)보다 152억 9,700만원 증액된 738억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47〉 '22 ~ '23년도 맞춤형복지비 구성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기본복지	변 동 복 지											
		근속 (월)	가 족 점 수					출 산 축 하			건 검 강 진	난 임 지원	태 아 산 모 검 진
			배우자	작계 존속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격년제	해 당 자	
												1 회	자랑 1 회
'22년	700	최대 300	100	50	50	200	300	-	2,000	3,000	200	500	100
'23년	900	최대 350	200	100	100	200	300	1,000	3,000	5,000	200	500	100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09

※ 주1) '23년도 근속점수 부여방식 변경(연차별 1만원 → 10년차까지 10만원, 11년차부터 연차별 1만원)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16)

○ **계약제근로자인건비**(예산담당관)는 지방공무원 결원시 대체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336억 5,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8〉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A - B)	증 감 률
합	계	33,653	30,274	3,378	11.1
	지 방 공 무 원 대 체 인 건 비	15,173	14,147	1,026	7.2
	장애인고용의무제 관 련 운 영	18,479	16,127	2,352	14.5

-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는 지방공무원중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될 경우,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체인력 인건비(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를 지원하는 것으로, '23년도에는 시간당 생활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생활임금 증액분 10억 2,6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은 중·경증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매월 140만원)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소요액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23억 5,200만원 증액된 184억 7,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자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 지난 '16년도에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20년도부터 장애인공무원의 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을 부과('21년 납부)하고 있으나,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있어,
 - '22년도 부과분('23년도 납부)까지는 관련 법령의 부칙에 따라 2분의 1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만 '23년도 부과분('24년도 납부)부터는 고용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고용률이 현 수준에 그친다면, '24년도에는 '2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예산편성액(52억 9,8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00억원 가량 고용부담금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고용부담금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공무원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9〉 '21 ~ '2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2021년도 최종예산
	장애인고용부담금(근로자)	413	722	517
	장애인고용부담금(공무원)	5,298	3,946	4,187
합	계	5,711	4,669	4,704
	증 감 률	22.3	△0.7	

※ 자료근거 :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p.1680
 「'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 p.624
 「'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 p.90

□ **교육급여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65)

- **교육급여지원**(참여협력담당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308억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50〉 교육급여지원 편성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륜
합 계		30,836	27,517	3,319	12.0
기타급여	인원수	42,780	45,109		
	예산액	23,263	20,697	2,565	12.4
입학금 및 수업료	인원수	1,154	1,043		
	예산액	7,573	6,819	753	1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3532('22.10.31)

- **기타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금(무상교육 비대상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경비로 ①'23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분 및 ②기존 단위학교에서 발송하던 보장결정 통지를 교육청에서 일괄 발송함에 따른 우편요금(6,5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275억 1,700만원) 보다 25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급여 대상자수가 1,043명에서 1,154명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최종예산(68억 1,900만원) 보다 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급여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요 재원을 교육청 및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분담하는 사업으로

- 국가·서울시·자치구는 각각 60:28:12를 분담하나, 교육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교육청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0% 부담하는 바,
- '23년도 편성액(307억 6,600만원)중 교육청 부담분은 47억 500만원이며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부담비율(60:28:12)에 따라 260억 6,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51〉 2023년도 교육급여지원 자원분담 현황

(단위 : %, 백만원)

소 득 인 정 액 기 준		입 학 금 · 수 업 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분 담 기 관 (분 담 륜)	분담액	분 담 기 관 (분 담 륜)	분담액
중위소득 40% 이상, 50% 이하		교육청(100)	4,705	국 가(60)	13,918
중위소득 40% 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국 가(60)	1,717	서울시(28)	6,495
		서울시(28)	801	자치구(12)	2,783
		자치구(12)	343		
합 계			7,568	합 계	23,19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13532, ('22.10.31), 「14-1. 교육급여 보장비용 분담」

□ 혁신교육지구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00)

- **혁신교육지구운영**(참여협력담당관)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민관학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164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52〉 혁신교육지구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 도		증감(A-B)	증 감 률
		본 예 산	최종예산(B)		
혁신교육지구운영	16,455	17,562	18,222	△1,767	△9.7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14,817	13,706	16,206 ^{주1)}	△1,389	△8.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역량강화	1,564	1,782	1,942	△378	△19.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협의체운영	73	73	73	0	0.0

※ 주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5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원 증액
 · 대상: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25개 자치구
 · 내용: 마을돌봄 및 마을방과후 등 교육활동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등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은 관내 학교(1,219교)에 교부하는 학교회계전출금(125억 900만원)과 교육지원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48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기존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해 온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사업이 서울시의 '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족 확보된 11억 2,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소요예산의 경우 '22년도에도, 서울시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기존사업과 중복사업 조정 및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미흡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감액(△25억원)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예산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원활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소요 예산이 부족 편성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여 동 조례로 정한 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나,

■ 서울시가 제출한 '23년도 예산안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19~'22년)이 금년도 종료를 사유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방안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역량강화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 운영한 도담도담 마을학교 공모사업을 폐지하여 금년도 최종예산(19억 4,200만원) 대비 △19.4%, △3억 7,800만원이 감액된 15억 6,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69)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참여협력담당관)은 교육취약학생(유아)에게 교육·복지·문화·진단·상담·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53〉 2023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합 계	11,181	8,937	2,244	25.1
교육복지학교사업비	4,840	4,086	753	18.4
두런두런프로그램 운영	332	255	77	30.2
서울희망교실 운영	6,009	4,594	1,414	30.7

○ **교육복지학교사업비**는 서울형 교육복지 거점·일반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8억 4,000만원을 편성한 바,

- '23년도 서울형 교육복지 거점학교 지정 확대 및 교육복지실 환경개선 지원학교 증가 등에 따라 금년도 대비 7억 5,300만원 증액된 48억 4,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두런두런프로그램운영**은 두런두런 자원활동가와 교육취약 유아의 맞춤형 1:1 그림책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3억 3,200만원을 편성한 바,

-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사업의 정상화에 따라 지원대상 유아수 (400명→600명) 및 활동횟수(유아별 10회 →15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대비 7,7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희망교실운영**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교육취약 학생의 통합 성장 지원을 위한 사제멘토링 사업으로, 서울희망교실 5개년('18~'22년)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희망교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 대비 30.7%, 14억 1,400만원 증액한 60억 900만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입학준비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16)

○ **입학준비금**(참여협력담당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등 신입생(학부모) 대상으로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입학준비금은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로 금년도 최종예산(568억 3,000만원)보다 9억 7,000만원 증액된 578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 '23년도 편성액(575억 6,000만원) 중 교육청·서울시·자치구 분담비율에 따라 교육청 275억 1,200만원, 서울시 172억 6,800만원, 자치구 127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54〉 2023년도 입학준비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합	계	57,800	56,830	970	1.7
	입 학 준 비 금	40,532	39,862	670	1.6
	입 학 준 비 금 (서울시 전입금)	17,268	16,968	300	1.7

- 동 사업은 지난 6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지원금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완료”하고, 입학지원금 사용범위를 기존 의류 및 도서에서 입학에 필요한 물품으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됨

2) 교육정책국

□ 누리과정지원

-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02)
- **유아보육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04)
- **유아학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07)
- **유아학비부대경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10)
-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13)

- **누리과정지원**(유아교육과)은 만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4,943억 3,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55〉 2023년도 누리과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A)	2022년 최종예산(B)	증감 (A-B)	증감률
합	계	494,336	560,352	△66,016	△11.7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2,443	2,443	0	0.0
	유아보육료	280,569	339,188	△58,618	△17.2
	유아학비	209,930	217,151	△7,220	△3.3
	유아학비 부대경비	173	307	△133	△43.4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1,218	1,261	△43	△3.4

- 누리과정중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은 만3~5세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외국 국적 유아에게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4억 4,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을 재원으로 어린이 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4,90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23년 1월경 교육부의 확정통보에 따라 지원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액을 증、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관련 법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23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검토됨

○ **유아학비 부대경비**는 사립유치원신용카드 수수료 및 유아학비지원시스템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납부 등을 위해 1억 7,300만원, **저소득층유아학비 추가지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해 12억 1,800만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초등돌봄교실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53)

○ **초등돌봄교실운영**(초등교육과)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60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표 2-56〉 **초등돌봄교실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A - B)	증 감 률
합 계	26,045	27,733	△1,688	△6.0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25,931	27,679	△1,748	△6.3
초등돌봄교실담당자연수	114	54	60	110.8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①돌봄교실운영비 185억 8,200만원, ②돌봄교실 증설(6실), 겸용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11실), 노후시설 보수(98교), 학년연구실 구축(1교), 안전·위생 시설개선(76교)에 소요되는 경비 15억 900만원, ③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14억 4,000만원, ④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돌봄운영비(소득비, 방역비) 44억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방과후학교사업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60)

- **방과후학교사업지원**(초등교육과)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및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을 위해 147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표 2-57〉 방과후학교사업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A - B)	증 감 륜
합 계	14,735	12,707	2,027	15.9
방 과 후 학 교 사 업 지 원 비	13,831	12,203	1,627	13.3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900	500	400	80.0
방과후활성화및사교육경감	3	3	0	0.0

- **방과후학교사업지원비**는 ①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및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 등 사업지원비와 ②‘더 좋은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등으로 138억 3,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은 초등 전일제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5:5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을 편성한 것임

□ 기초학력향상지원

■ 기초학력향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81)

■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89)

- 기초학력향상지원은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초·중등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13억 3,500만원) 대비 77억 500만원 증액한 290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58〉 기초학력향상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A - B)	증 감 륜
합 계 (A + B)		29,041	21,335	7,705	36.1
초 등	소 계 (A)	19,356	17,673	1,683	9.5
	① 기초학력보장지원	14,589	12,377	2,212	17.8
	서울학습도움센터운영	324	1,156	△831	△71.9
	초등전환기기초학력 보 장 지 원	—	376	△376	△100.0
	학 습 상 담 운 영	4,442	3,763	678	18.0
중 등	소 계 (B)	9,684	3,662	6,022	164.4
	② 단위학교기본학력 책 임 지 도 제	9,182	2,316	6,866	296.4
	맞춤형학부모학습상담	—	829	△829	△100.0
	역 량 강 화 지 원	392	516	△124	△24.1
	③ 전환기기본학력보장 프 로 그 램	110	0	110	100.0

- ①기초학력보장지원은 공립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과수업 시간 내 협력강사 지원 및 단위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등을 위해 145억 8,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금년도에 전체 공립초등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지원되었던 “단위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사업이 '23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전환되어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에 포함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②단위학교기본학력책임지도제는 중、고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23억 1,600만원) 대비 296.4%, 68억 6,600만원 증액한 91억 8,200만원 편성한 것인 바,
- '23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한 교육부의 교육결손회복 특별교부금 중 70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62억 2,200만원을 중、고등학교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것으로 확인됨
- ③전환기기본학력보장프로그램은 '23년도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전환기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역량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1억 1,000만원 편성한 것임

□ **원격교육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29)

- **원격교육지원**(중등교육과)은 원격교육 역량강화 및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벗 등 교육정보기술(Edtech)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9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59〉 원격교육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23년도 예 산 안	2022년도 최 종 예 산	증 감 액 (비 율)	편 성 내 역
합 계	92,667	39,961	52,706 (131.9)	
디지털기반학생 맞춤형교수학습지원	92,389	39,673	52,716 (132.8)	· 스마트기기 보급 830억원 · 학교스마트기기관리포털개발 21억원 · 학생스마트기기 sw보급 16억원 · 디지털 튜터 지원 등
원격교육네트워크 구 축 · 운 영	277	287	△9 (△3.4)	· 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등

○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은 교원·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교원 「디벗」 활용 역량 강화연수, 「디벗」 활용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혼합수업 콘텐츠 개발,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 포털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527억 1,600만원 증액한 923억 8,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사업은 '23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혼합수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 포털 구축 사업은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유해사이트, 유해앱 설치 제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한 것임

○ 「디벗(Digital+벗)」은 교원·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확대계획」에 따라 '22학년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표 2-60〉 「디벗(Digital+벗)」 연차별 확대 계획(안)

구분	현황	2022	2023	2024	2025	2026
초등학교	신규 보급			5학년 교원	5학년	5학년
	디벗 활용			교원 5학년	교원 5학년 6학년	교원 5학년 6학년
	비고					-물품 관리전환(연초)
중학교	신규 보급	1학년 교원	1학년	1학년	1학년	
	디벗 활용	교원 1학년	교원 1학년 2학년	교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원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중학교 보급 종료 -물품 관리전환(연초)	-기기 혼재 발생 -일부 교원 기기 내용연수 만료(연말)
고등학교	신규 보급		1학년 교원	1학년		
	디벗 활용		교원 1학년	교원 1학년 2학년	교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원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고등학교 보급 종료	-기기 혼재 발생	-졸업생 기기 양품화(연초) -일부 2학년 기기 내용연수 만료(연말)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11890('22. 3.21),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확대 계획 알림” p.7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3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으로 51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표 2-61〉 '21~'23년도 「디벗」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상 학 년	예산액 ^{주1)}	비 고
2021년도	1 회 추경	2022학년도 중1학년 중학교 교원 전체	60,019	
	2 회 추경	혁신고(14개교) 1학년 학생 및 교원 전체	2,111	
2022년도	본 예 산	2023학년도 중1학년	51,734	· 구매방식 (학교회계전출금 목 편성)
	2 회 추경	2023학년도 중·고1학년 고등학교 교원 전체	△20,714	· 구매방식→임차방식 (학교회계전출금 → 운영비로 편성목 변경) · 지원대상 확대 (중1→중·고1, 고 교원)
2023년도	본 예 산	2023학년도 중·고1학년 고등학교 교원 전체	83,034	· 임차방식→구매방식
합 계			176,185	

※ 주1) 예산액 : 「원격교육지원」 사업 중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만 표시 (부대비용 제외)

-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구매에서 임차**로 변경하고자 스마트기기 구매예산을 당초보다 △207억 1,400만원 감액하고, 예산과목 또한 변경요청한 바 있으나,
- 지난 10월, 「2023년도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방식을 **임차에서 구매**로 변경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예산 또한 기타임차료에서 기타유형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전용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3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요청한 예산과 함께 '23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원 전체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62〉 '23학년도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인원	확보현황		
		'22년도 제2회 추경(A)	'23년도 본예산안(B)	계(A+B)
'23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원 전체	165,000명 ^{주1)}	35,382 ^{주2)}	83,034	118,417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37637('22.10.29), "2023학년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기본계획 변경(안)"

- 주1) 중학교 1학년: 70,000명, 고등학교 1학년 74,500명, 고등학교 교원: 20,500명
- 주2) 스마트기기보급예산(310억 2,000만원, 전용) + 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예산(43억 6,200만원, 예산변경)

○ 그러나, ①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②관련 기준에 따르면 이·전용은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중점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23년도 소요예산이 확정된 이후 내년초부터 동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월 및 전용을 활용하여 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 '23년 본예산을 통해 전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금년도에만 스마트기기 지원방식을 '구매 → 렌탈 → 구매'로 두 차례나 변경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바, 사업완료시기까지 연차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또한, 「디벗」 사업은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비용 뿐만 아니라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 유지보수비용, 관련 사업추진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구조를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정투입효과 분석 및 중장기 예산확보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과 연동된 교육재정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94)

○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중등교육과)은 단위학교의 협력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45억 7,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3〉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4,575	194	4,380	2,256.6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179	194	△15	△7.7
서울형독서토론수업운영	4,396	0	4,396	순증

○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은 교원의 독서·토론·글쓰기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억 7,9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서울형독서토론수업운영**은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43억 9,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초·중·고에 교당 3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인·교과·팀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질문·소통·협력 중심 독서·토론 수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형독서토론수업운영 사업은 기존 ‘서로 성장하는 교실’ 사업을 ‘서울형 독서 기반 프로젝트’로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2년도에는 교육부의 교육회복 특별교부금으로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3년도 이후에는 특별교부금이 미교부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교육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20)

-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중등교육과)은 ’23년도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서울의 특색에 적합한 형태로 연구·적용하여,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운영하고자 26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4〉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A - B)	증 감 률
교 육 과 정 다 양 화 지 원	2,685	0	2,685	순증

- 동 사업은 ①‘서울 미래형 교육과정·수업·평가’ 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추진단 운영, 탐색학교 운영, 국내외각급 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홍보 및 이해자료 제작과 ②‘서울 미래형 교육과정·수업·평가’ 시행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운영,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설명회 운영 등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①설명회, 워크숍 등은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비 목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②‘국제교육기관 협력체제구축비’는 구체적으로 협력기관, 범위 및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협정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한 해외이전 목 으로 편성、제출하고 있어, 세출과목 및 편성규모 등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예산안 편성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정확한 산출기초 를 제시하여 시의회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65〉 교육과정내실화지원 세부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편성목	편성	세부	내역
교육과정내실화지원	운영비	교원역량강화연수운영비	600,000원×120명×2종×2학교급	= 288
		미래교육체제기반조성연수운영비	400,000원×30명×2종×2학교급	= 48
		핵심교사단양성연수운영비	800,000원×5회×50명	= 200
		미래형교수학습실천단운영비	120,000원×250명×8회×2학교급	= 480
		설명회운영비	10,000,000원×2회×2학교급	= 40
		(교육지원청)워크숍운영비	2,000,000원×11회×2학교급	= 44
		각급기관협력체제구축운영비	5,000,000원×2회	= 10
		연구단연수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2시간+50,000원×3시간)×5명×4회	= 9
		연구단운영비	(400,000원×20회)+(1,000,000원×2회×2학교급)	= 12
		연구단자문수당	(60,000원×18명+80,000원×2명)×20회	= 24
		연구단학교탐방활동비	550,000원×40명×2회	= 44
		학습공동체연구결과보고서	5,000,000원×2회	= 10
		학습공동체운영결과공유행사비	5,000,000원×2회	= 10
		탐색학교워크숍및보고회운영비	100,000원×320명×2회×2학교급	= 128
		홍보및설명회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50,000원×2시간)×4명×11회×2학교급	= 30
		홍보자료제작비	22,000,000원×4종	= 88
	여비	연구강사여비	110,000원×4명×6회×2학교급	= 5
	업무추진비	교원역량강화사업추진경비	(20,000원×40명×2회×2학교급)+(20,000원×10명×5회×2학교급)	= 5
		설명회사업추진경비	20,000원×40명×6회	= 4
		각급기관협력체제구축추진경비	20,000원×20명×3회	= 1
		연구단사업추진경비	20,000원×20명×4회	= 1
	해외이전	국제교육기관협력체제구축비	87,500,000원×4회×2학교급	= 700
	학교회계전출금	탐색학교운영비	20,000,000원×20교	= 400
		학습공동체운영비	2,000,000원×50교	= 100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4-2)」, p.1221

3) 평생진로교육국

□ 맞춤형취업기능강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78)

-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맞춤형취업기능강화**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현장실습·취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11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6〉 2023년도 「맞춤형취업기능강화」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11,000	7,813	3,186	40.8
	취업기능강화	10,328	7,185	3,142	43.7
	취업지원관인건비	672	628	43	6.8

- 사업내용중 **취업기능강화**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74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드림(Dream) 성장지원 바우처”를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자격등 취득 및 교재구입,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 비용 지원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하고자, '22년도 보다 43.7%, 31억 4,200만원 증액편성한 것임

〈표 2-67〉 「맞춤형취업기능강화」 중 ‘취업기능강화’ 사업내역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3 년 도 예 산 안	
			산 출 기 초	금 액
취 업 역 량 강 화 바 우 처				10,328
	사 업 추 진 경 비	업무추진비	20,000원×10명×5회=	1
	취업역량강화(공립)	학교회계전출금	500,000원×5,126명=	2,563
	취업역량강화(사립)	학교회계전출금	500,000원×15,528명=	7,764

- 취업지원관인건비는 취업지원센터(4명)와 직업계고 24교(24명)의 취업지원관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취업지원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관 정원(무기계약) 2명은 노사협력담당관으로 인건비를 이관하였으며, 28명의 인건비만 동 사업에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년도와 인원은 같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3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22년도(11,240원)보다 7%, 790원 인상된 시간당 12,030원을 적용하고, 수반되는 수당 및 보험료 등 경비도 연동되어 소요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무상급식**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765)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무상급식**은 '22년도 최종예산(6,217억 700만원) 대비 △5.6%, △208억 9,000만원 감액한 6,008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식품관리비, 인건비 소요액 중 **교육청 재원 부담금**을 편성한 것임

〈표 2-68〉 2023년도 「무상급식」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A-B)	증 감 륜 (C/B)
합	계	600,817	621,707	△20,890	△3.4
	(유치원) 식품관리비	22,652	25,699	△3,046	△11.9
	(유치원) 인 건 비	17,052	12,610	4,442	35.2
	식 품 관 리 비	287,940	349,848	△61,908	△17.7
	인 건 비	265,402	226,017	39,385	17.4
	조 리 종 사 원 대 체 인 력 인 건 비	7,768	7,532	235	3.1

- 무상급식 지원일수가 공립유치원 182일, 사립유치원 217일, 초등학교 192일, 중학교 180일, 고등학교 173일, 특수학교 192일로 금년도 대비 공립유치원 4일, 사립유치원 23일, 중학교가 7일 증가하고, 과일급식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식품비와 관리비 및 조리종사원인건비가 증가하였음에도 '23년도 무상급식비 예산액이 감소한 것은 자치구 분담액(1,373억 5,100만원)을 '23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이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23년도 유치원 원아(6만 5,378명)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생(80만 9,759명)이 금년도 대비 유치원 원아 △1,286명 감소,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생 △1만 5,585명 감소하여 단가 및 인원수·급식일수를 산출기초로 하는 식품관리비 예산편성액에 인원수(△1만 5,585명) 감소 규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2-69〉 급식지원대상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학교	계
2023년도	65,378	394,291	207,650	203,532	4,286	875,137
2022년도	66,664	396,182	213,195	211,423	4,444	891,908
증 감	△1,286	△1,891	△5,545	△7,891	△158	△16,77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8935('22.10.26), "2023. 학교급식비 예산편성 계획 조정(안)"

- 무상급식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5:3:2로 분담하고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22년도부터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산정시 포함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바,

- 서울시에서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인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재원 분담 조정을 요청하여, '23년도 예산안부터는 공립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2,022억 4,000만원)를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게 되어,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한 교육청의 실제 분담비율은 전년대비 6%p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표 2-70〉 학교급식 재원분담 연도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총 소 요 액		889,000	856,378
분담액 (100%)	교육청(50%)(A)	343,379	383,836
	서울시(30%)	206,027	230,301
	자치구(20%)	137,351	153,534
교육청 별도부담 인건비(B)		202,240	88,705
교육청부담 계(A+B)		545,620	472,542
실 제 분 담 률		교육청 61% 서울시 23% 자치구 16%	교육청 55% 서울시 27% 자치구 18%

※ 2023년도부터 공립학교 조리(실무) 인건비 100% 교육청 분담(국, 사립학교, 급식보조인력 기준대로 5:3:2 재원 분담)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8935('22.10.26), “2023. 학교급식비 예산편성 계획 조정(안)”

- 다만, 교육부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나, 예산편성시점에는 다음 회계연도중 직종별 공무원의 인원수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근무하는 공립학교 급식종사자 현원을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회계연도중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미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가 공립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 교육부가 지원하여 중복되는 인건비는 서울시지원이 불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향후에도 교육청의 실제 부담비율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71〉 2023년도 「무상급식」 중 인건비 사업내역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3 년 도		예 산 안
		산	출 기 초	금 액
인	건 비			265,402
	공 립 학 교 학교회계전출금	$(38,478,000\text{원} \times 2,409\text{명}) + (38,478,000\text{원} \times 2,847\text{명}) + (5,905,457\text{원} \times 3,987\text{명} \times 50\%) =$		214,012
	국 립 학 교 전 출 금 등	$(38,478,000\text{원} \times 53\text{명} \times 50\%) + (5,905,457\text{원} \times 31\text{명} \times 50\%) =$		1,111
	사 립 학 교 학교회계전출금	$(38,478,000\text{원} \times 2,029\text{명} \times 50\%) + (5,905,457\text{원} \times 1,192\text{명} \times 50\%) =$		42,555
	학교급식방역인건비(공립)	학교회계전출금	$12,030\text{원} \times 3\text{시간} \times 100\text{일} \times 1,624\text{명} =$	5,861
	학교급식방역인건비(사립)	학교회계전출금	$12,030\text{원} \times 3\text{시간} \times 100\text{일} \times 516\text{명} =$	1,862

□ **대안교육기관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440)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대안교육기관지원**은 관련 법령이 '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안정성 제고와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중단 없는 학업 지원을 위하여 2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2〉 2023년도 「대안교육기관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률
합	계	205	213	△8	△4.1
	대안교육기관등록 및 지원 사업 운영	205	213	△8	△4.1

- 대안교육기관등록 및 지원사업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서울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2년도 보다 등록기관수와 관련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22년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하여 '22년도중 두 차례의 등록공고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을 받은 바, 등록결과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이후 소요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소요예산중 민간이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기자재·교재(도서) 구입비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 1억 5,000만원을 승인하여 '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표 2-73〉 '대안교육기관등록및지원사업운영' 중 민간이전 목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3 년 도 예 산 안	
			산 출 기 초	금 액
대 안 교 육 기 관 교 육 지 원				150
	민 간 이 전	민 간 이 전	10,000,000원×15기관=	150

○ 동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중 신규사업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원을 서울특별시의 '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서울시가 편성한 연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바, 관련 조례안이 지난 10월 발의됨에 따라 소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향후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편성한 교육경비보조사업중 대안교육기관 지원(70억원)이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른바 '예산의 법정의결시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사료됨

□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443)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 사전 예방을 위하여 74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74〉 2023년도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7,405	7,246	159	2.2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운영	6,949	6,885	64	0.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456	361	95	26.3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은 대안교육지원센터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40개 민간기관), 단위학교(2교)를 대상으로 하여 민간이전비와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진로교육, 특화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는 사업임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은 국·공·사립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대안교실운영학교와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교를 금년도 26교에서 '23년도 35교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편성액도 9,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75〉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중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사업내역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3 년 도 예 산 안	
			산 출 기 초	금 액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				456
	학교내대안교실운영학교(공립)	학교회계전출금	8,000,000원×29교=	232
	학교내대안교실운영학교(국립)	전 출 금	8,000,000원×1교=	8
	학교내대안교실운영학교(사립)	학교회계전출금	8,000,000원×5교=	40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공립)	학교회계전출금	8,000,000원×11교=	88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사립)	학교회계전출금	8,000,000원×11교=	88

□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62)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 추진**은 남북교육교류 기반을 조성하고자 통일안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6〉 2023년도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도 예 산 안 (A)	2 0 2 2 년 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42	42	-	-
	남북교원학생평화 교육교류추진	42	42	-	-

-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안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한 4,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22년도 경우,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남북교육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업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 검토되며 '23년도에도 금년도와 추진일정이 동일하게 운영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77〉 '19년~'21년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차년도이월(c)	불용액(a-b-c)
2019	250	9	—	240
2020	2	1	—	0.5
2021	52	51	—	0.4

- 다만, 지난 '20년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해당 기금 또한 남북교육교류 기반조성을 표명하고 있는 바,
-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 추진**이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할 것이나, 동 사업 내용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고 관리방식을 일원화하여 기금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자원분배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사업예산은 감액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890)

- 특수교육과 소관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하여 6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8〉 2023년도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617	535	82	15.4
	①긍정적행동지원운영	92	40	52	130.0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 체 자 료 제 작	57	57	—	—
	특수교육관련행사지원	51	48	2	6.0
	특 수 학 교 수 중 재 활 실 운 영	60	60	—	—
	②행동중재특별지원	356	329	27	8.3

- ①**긍정적행동지원운영**은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급)에 대한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2년도에는 학교회계전출금과 업무추진비만 편성되었으나, '23년도 예산안에는 누리집 운영 및 자료 개발 사업을 통합하고, 교원 대상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성 신장 연수를 확대하고자 5,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②**행동중재특별지원**은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행동중재특별지원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중재전문관이 문제행동 예방 및 학교적응 지원을 하기 위한 행동중재전문관 2명의 인건비 증액분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이 반영된 2,7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4) 교육행정국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974)

-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도(1조 1,771억 1,100만원) 보다 1.6%, 192억 9,700만원 증액된 1조 1,964억 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9〉 2023년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감률
합	계	1,196,408	1,177,111	19,297	1.6
	사립중학교	314,057	308,081	5,975	1.9
	사립고등학교	809,370	804,534	4,835	0.6
	사립특수학교	72,980	64,494	8,485	13.2

- '23~'27년도 중기 교직원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예산 편성 대상인 사립교원의 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사립학교직원은 소폭으로 증가(0.2%)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소요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할 수도 있으나,
 - 중기 경상지출 전망에 따르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가 포함되어 있는 인력운영경비의 경우, 사립교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향후 5년동안 연평균 3.1%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교직원 인건비는 교육재정중 고정경비로 점유비중이 높고,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 지출액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인건비재정결함보조**의 경우, 소요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보수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어 매 회계연도 결산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소요예산 부족시 예산을 이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80〉 중기 교직원수 변동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 평균 증 가 율
사 립 교 원	22,935	22,715	22,497	22,280	22,066	△1.0
사립학교직원	2,171	2,182	2,185	2,185	2,185	0.2

※ 자료근거: '23~'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12, 'Ⅱ.1. 학생·학교·학급·교직원수 변동 추이'

〈표 2-81〉 중기 경상지출중 인력운영경비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 평균 증 가 율
인 력 운 영 경 비	35,803,142	6,735,709	6,930,791	7,144,738	7,381,340	7,610,564	3.1

- 인력운영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단위사업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내 인건비(110),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공무원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 세부사업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내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620-16)
 - 모든 단위사업의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 ※ 자료근거: '23~'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29~30, 'Ⅲ.2.다.1)성질별 지출 전망'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977)

○ 학교지원과 소관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금**은 적정규모화 추진 학교의 학생 지원, 교육활동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금년도(25억 6,300만원) 보다 75.7%, 19억 4,100만원 증액된 45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①**신설학교대체 이전학교 지원**은 이전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사업 지원으로 이전학교 2교를 추진할 예정이고, ②**통폐합학교지원**은 학생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통합학교 13교와 폐지학교 2교를 지원하며, ③**통합운영학교지원**은 통합운영학교 6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82〉 2023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감(A-B)	증감률
합	계	4,505	2,563	1,941	75.7
	①신설학교대체 이전학교지원	1,287	422	864	204.6
	②통폐합학교지원	2,754	1,741	1,013	58.2
	③통합운영학교지원	463	400	63	15.9

□ **물품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32)

- 교육재정과 소관 **물품관리**는 불용물품 처분 등 물품관리와 전자철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25억 4,000만원) 보다 6,160.2%, 1,565억 2,400만원 증액된 1,590억 6,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 동안 동 사업은 ①물품관리, ②전자태그기반물품관리시스템구축, ③전자철판설치 3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23년도에는 일몰사업인 ②전자태그기반물품관리시스템구축은 '23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③**전자철판설치**는 국·공·사립·각종학교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및 특수학교 전학년 총 15,906학급 대상으로 1,590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2-83〉 2023년도 「물품관리」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합	계	159,065	2,540	156,524	6,160.2
①	물 품 관 리	5	5	-	0.0
②	전 자 철 판 설 치	159,060	-	159,060	순증
③	전자태그기반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	-	2,535	△2,535	일몰

- 지난 '21년 8월,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철판 설치 기본 계획(안)”에 따라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교 1·2·3·4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21년도에 중학교 1학년 2,878개 학급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

- 지난 8월 의결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당초 제출안에는 5,245학급을 대상으로 전자칠판을 설치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전자칠판 사업예산 524억 5,000만원 전액이 감액된 사례가 있음
- '23년도 예산안에는 지난 8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결과 삭감된 지원대상과 '24년도 추진예정분에 대한 소요예산 1,590억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84〉 '23년도 전자칠판 설치 기본 계획중 연도별 추진 변경전·후

구 분	(1차) 2021년	(2차) 2022년	(3차) 2023년	(4차) 2024년
변경 전 ('22년)	중1	중2· 고1· 특수	초 5, 중3 · 고2	초 6, 고3
변경 후 ('23년)	중1 (집행완료)	중2· 고1· 특수 (예산심의 결과 삭감)	초5 ~ 고3 전체 (중1 제외)	—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278('22.10.31), “(2023년 3차년도)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기본 계획(안)”

- 사업부서가 그동안 전자칠판 설치 찬반 의견수렴, 사후 만족도조사, 정책연구 요청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책연구의 경우, 미종료 상태로 확인되는 바, 수 년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의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대상,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마친 이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전자칠판설치의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학교에서 자율 구매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자철판 설치 사업 초년도에 정해놓은 단가 (1,000만원)를 3년 동안 변경 없이 산출기초로 여전히 적용하고 있고 학교로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학교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기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단가를 재산정 하는 등 계획수립 당시의 부족함이 예산집행 단계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동일한 단가를 수년간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별도 운용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연도별·순차적으로 전자철판을 설치하는 계획 또는 기설치 학교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 등이 충분히 분석된 이후 학교 유·무선망 인프라 구축,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등과 연동하여 계획을 보완·개선한 이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120)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은 금년도(499억 3,600만원) 보다 226.7%, 346억 5,300만원 증액된 499억 3,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서울미래교육 공간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①**직속기관환경개선**의 경우, 직속기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44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②**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54억 4,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85〉 2023년도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합	계	49,936	15,282	34,653	226.7
	①직속기관환경개선	24,490	6,281	18,209	289.9
	②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	25,445	9,001	16,444	182.7

□ 노후시설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167)

○ 노후시설개선(교육시설안전과)은 학교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2년도 최종예산(8,997억 5,800만원) 보다 △16.0%, △1,435억 3,000만원 감액된 7,562억 2,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학교현장의 노후시설 개선요청에 대하여 세세부사업별 분류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사업우선순위(단위사업·학교단위)'를 확정하고, 시설 사업비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제출됨

■ ①화장실개선은 전면개선과 부분개선으로 구분되며 전면개선은 노후 화장실 전면보수비 및 화장실개선 디렉터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53건(공립 132건, 사립 21건), 462억 1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고, 화장실 전면개선 주기를 15년(기존 내용연수 20년에서 5년 축소)으로 단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②창호개선은 1,076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외부창호, 중연창, 교실 출입문 개선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됨

〈표 2-86〉 2023년도 「노후시설개선」 편성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물 량	예 산 액	물 량	예 산 액	물 량	예 산 액	증 감 률
합 계	2,707	756,229	4,397	899,759	△1,690	△143,530	△16.0
① 확장실개선	168	50,734	147	34,449	21	16,285	47.3
전기시설개선	141	19,620	222	27,587	△81	△7,966	△28.9
냉 난 방 개 선	375	78,277	250	62,607	125	15,671	25.0
② 창 호 개 선	337	107,633	289	87,199	48	20,434	23.4
외 벽 개 선	115	74,406	81	33,002	34	41,404	125.5
소방시설개선	73	15,206	103	17,448	△30	△2,241	△12.8
방 수 공 사	258	35,056	324	41,587	△66	△6,531	△15.7
바 닥 개 선	167	59,106	169	42,393	△2	16,712	39.4
도 장 공 사	204	20,281	108	6,583	96	13,698	208.1
외부환경개선	145	13,632	200	22,825	△5	△9,193	△40.3
기 타 사 업	398	101,468	2,066	354,602	△1,668	△253,135	△71.4
장애인편의시설	110	31,278	98	34,227	12	△2,949	△8.6
내 진 보 강	3	26,691	6	37,534	△3	△10,844	△28.9
드라이비트해소	160	51,545	125	47,586	35	3,960	8.3
샌드위치판넬제거	13	1,377	16	1,964	△3	△587	△29.9
석 면 제 거	3	47,500	46	20,168	△43	27,332	135.5
정 밀 점 검	37	22,417	147	27,997	△110	△5,580	△19.9

○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단위사업 종류별로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은 계속이어지는 공사현장이 되는 것은 물론 잦은 공사로 인해 사업효율성 저하와 학생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22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방식을 도입하여 ①학교별로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학교별 공사횟수를 감축하고 ②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 주기로 변경하여 1회 조사('21년도 대상사업 신청·조사)로 3년간('22년도~'24년도) 연차별 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됨

- 다만, 제도개선을 통해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일괄 해소라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사업이 학교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누락될 경우, 3년을 기다린 다음 신청하게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학교업무담당자나 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방법이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히 전달·인지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직속기관

□ 학교무선환경구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456)

○ **학교무선환경구축**(교육연구정보원)은 각급학교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내 와이파이(WiFi)를 접속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101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 학교내 무선AP 미구축 교실 신규 구축, 내용연수 초과 노후 AP 교체 추진을 비롯하여 학교별 무선인프라 구축·장비유지관리·시스템유지관리·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표 2-87〉 2023년도 「학교무선환경구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A)	2022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B)	증 감 륜
합	계	10,184	—	10,184	순증
	학 교 무 선 망 구 축	9,400	—	9,400	순증
	학교무선망유지관리	784	—	784	순증

○ 동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해당하여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23년도에 신규편성된 사업이나 지난 '20년도에 추진된 “학교무선인프라구축”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절차적 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무선환경구축**은 ①**학교무선망구축**(94억원)과 ②**학교무선망유지관리**(7억 8,200만원)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위탁운영하고자 자치단체등이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8〉 「학교무선환경구축」 목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목	2 0 2 3 년 도		예 산 안
			산	출 기 초	금 액
합 계					10,184
① 학 교 무 선 망 구 축		자치단체등이전	1,880,000원×5,000대=		9,400
학 교 무 선 망 유 지 관 리					
	학교무선망운영업무협의	업 무 추 진 비	20,000원×15명×4회=		1
	②학교무선망유지관리비	자치단체등이전	782,893,000원×1식=		782

○ **학교무선환경구축**의 경우, 당초 '20년부터 '21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이나 '22년도에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23년도에 순증 예산편성한 바,

- 디벗사업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전자철판 설치 등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액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소요예산 증가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표 2-89〉 중기 교육사업비중 원격교육지원 지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원	격 교 육 지 원	831,680	166,178	159,333	165,130	162,807	178,232	1.8

○ 교육사업비

-
- 위격교육지원**
- : 단위사업 학교정보화, 단위사업 교육복지지원 내 세부사업 정보화 지원

※ 자료근거: '23~'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31~32, 'Ⅲ.2.다.1)성질별 지출 전망'